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86회 임시회

202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 상인3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마을주차장 조성 】

검 토 보 고 서



2022. 3.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202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 상인3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마을주차장 조성 】

검 토 보 고 서

2022. 3. 16.
경제도시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202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 상인3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마을주차장 조성 】
- 제 출 자: 달서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
- 제출일자: 2022. 3. 4.
- 회부일자: 2022. 3. 4.
- 검토기간: 2022. 3. 7. ~ 3. 11.(5일간)

2. 제안이유

- 상인3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중인 마을주차장 조성사업 대상지의 인접부지 추가매입을 통한 더 많은 주차면수 확보로 지역주민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건립개요

- 위 치 : 달서구 상인동 1186번지 등 5필지
- 사업내용 : 주차면 29면 조성(부지면적 1,237.3m²)
- 사업기간 : 2020. 12. ~ 2023. 4월
- 사 업 비 : 3,002백만원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2021년	2022년	비 고
계	3,002	1,630	1,372	
국 비	850	850	-	
시 비	425	425	-	
구 비	1,727	355	1,372	

○ 사업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계	부지 매입비	설계 및 공사비
3,002	2,602	400

나. 취득대상 변경 현황

구분	위 치	면적(㎡)	매입(예정)가격 (백만원)	비고
계		1,237.3	2,602	
부지매입	상인동 1186	551.7	1,025	기확보 (’21. 5월)
	상인동 1187	248.9	457	
	상인동 1189-2	46.6	120	
	상인동 1218-1	99.3	1,000	추가매입 대상
	상인동 1218-6	290.8		

※ 당초 계획(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2020. 12. 14)

- 위 치: 상인동 1186, 1187
- 규 모: 주차면수 18면(부지면적 800.6㎡), 주민쉼터
- 사 업 비: 1,640백만원(부지매입비 1,453, 설계 및 공사비 187)

다. 추진경과

- ’20. 11월 : 상인3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세부사업별 운영계획 수립
- ’20. 12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 ’21. 5월 : 감정평가 및 부지매입(기확보 3필지)

라. 향후계획

- ’22. 3월 :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승인 및 의결
- ’22. 3월 : 추가경정예산 심의
- ’22. 4.~5월 : 추가부지 매입 협의
- ’21. 5.~7월 :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행계획 변경
- ’21. 8.~10월 : 감정평가 및 추가 부지매입
- ’21. 10.~11월 : 실시설계용역
- ’22. 12.~’22. 4월 : 주차장 조성공사

4.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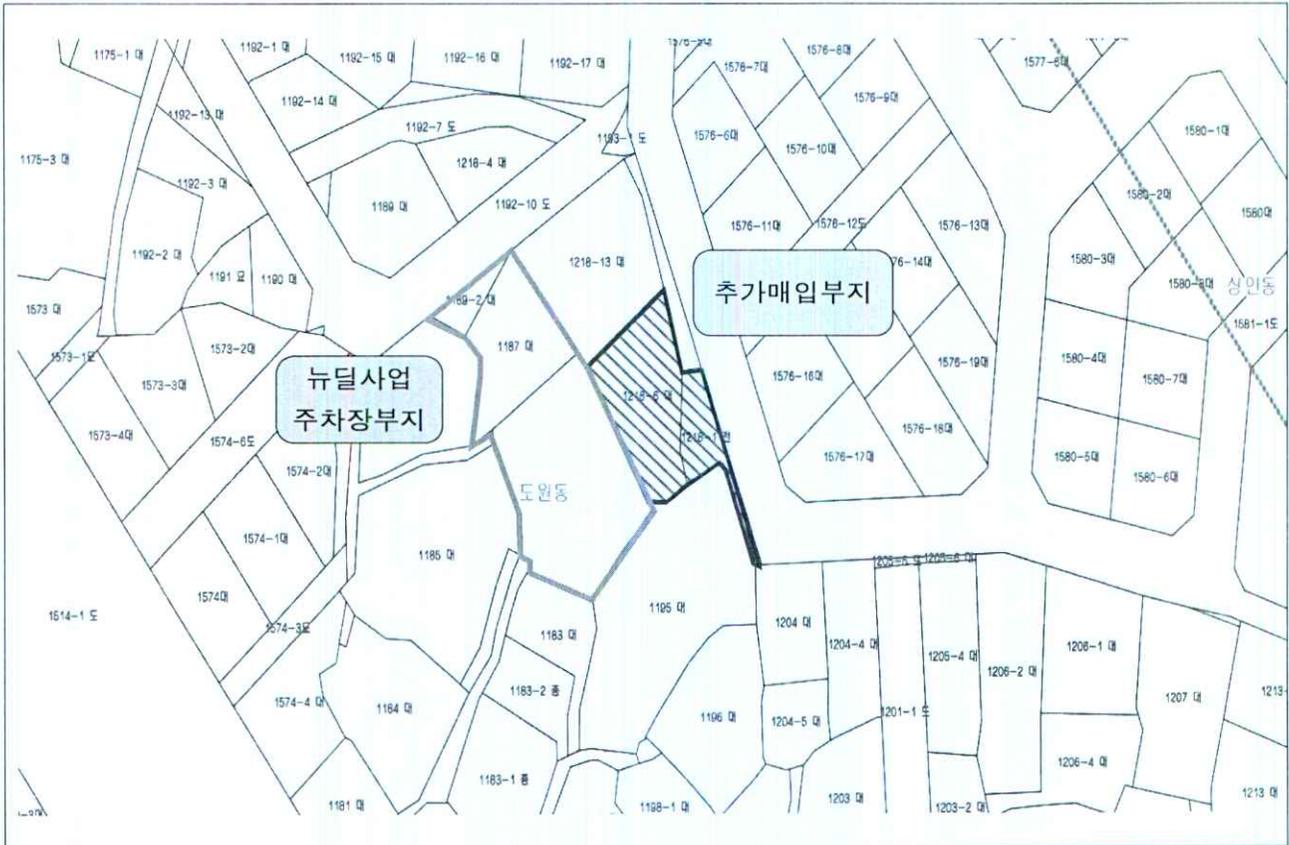
5.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상인3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세부 사업 중 마을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20년 12월 상인동 1186, 1187번지에 주차면수 18면의 마을주차장(800.6㎡) 및 쉼터(300㎡) 조성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으나, 당초 계획된 18면의 주차장 조성으로는 인근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미흡하여 기존 사업대상지 인접 부지 매입을 통한 주차면의 추가 조성을 위하여 관련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구의회에 제출한 것임.
- 취득대상 부지는 상인동 1218-1 및 1218-6 2필지 면적 390.1㎡로 매입예정가격은 10억원이며 11면의 주차면수를 추가 확보하려는 것임.
- 총사업비는 당초계획 사업비 1,640백만원 대비 1,362백만원이 증가한 3,002백만원으로 부지매입비 2,602백만원, 설계 및 공사비 400백만원임.
- 검토결과 추가매입대상 토지는 당초 사업대상지와 연접하여 있어 사업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여지며 당초 계획했던 주차 18면보다 11면이 늘어난 29면으로 조성되므로 인근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기존 사업대상지와 추가 매입 부지간 단차 및 진출입로 등을 고려하여 인근지역주민들이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장을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할 것임.

- 붙임 1. 위치도
2. 관련법령

붙임 1

상인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마을주차장 위치도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8조(중요 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① 법 제4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사업계획 수립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9. 23.]